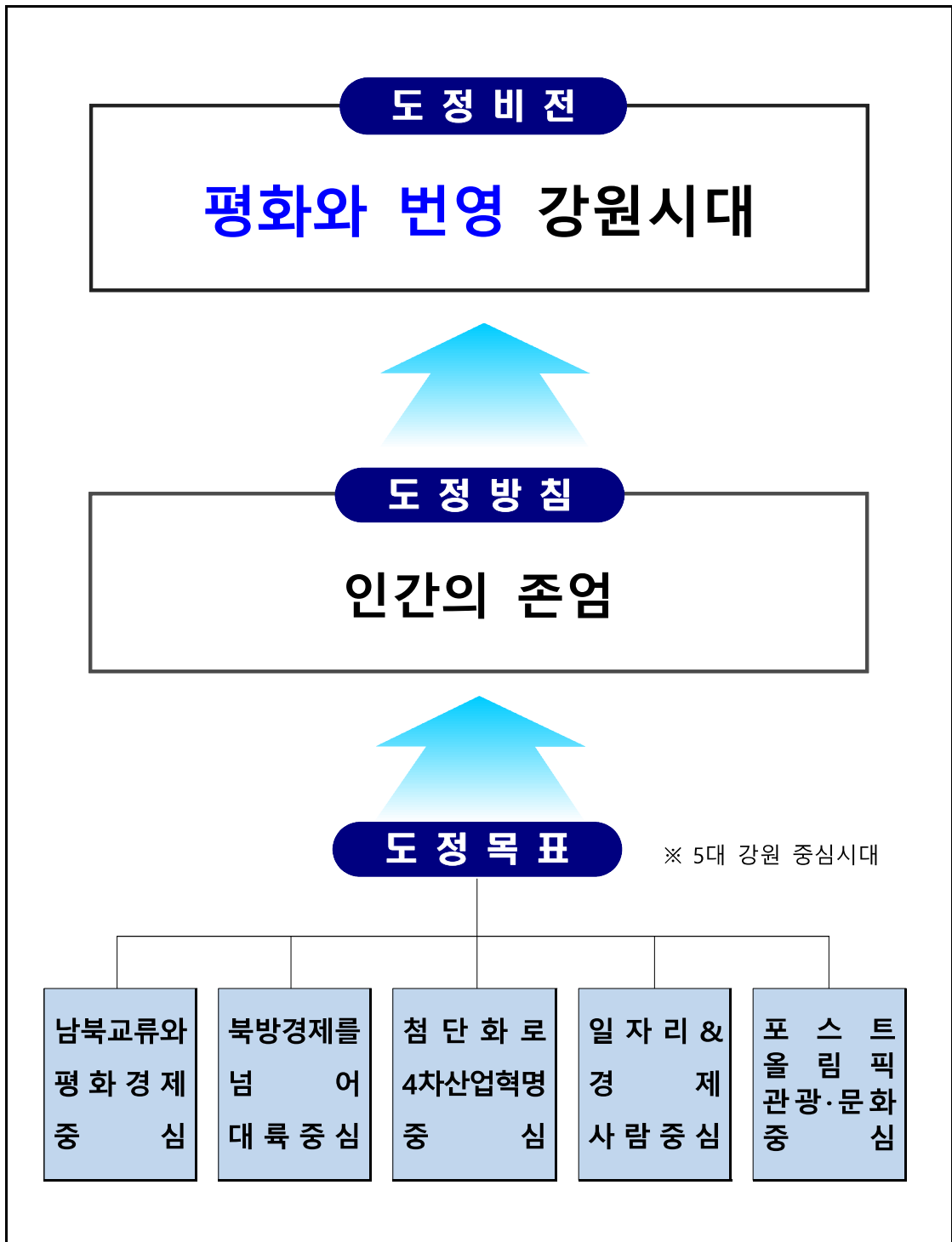


I . 재정운영 방향

1.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
2. 2022년 재정운영 방향
3. 2022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도정의 비전과 추진전략



2022년도 도정방향 및 추진전략

1] 2022년 도정방향

■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 하고 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

2] 핵심목표와 추진전략

도정 핵심목표 ⇒ **첨단산업 육성 + 방역·경제 회복**

* 핵심 달성지표 : 고용률 63%, 수출액 30억 달러, 1인당 GRDP 34,357천 원

핵심 추진전략 ⇒ **5대 분야 20개 과제**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 도민-도정-경제구조 전반의 온라인-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 첨단기술 기반 재난·재해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 육아·농어업인 상담,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소득·복지 안전망 강화
강원형 일자리 정책과 고용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 성장 기반 조성 ▶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 지역 문화산업 진흥 및 생활·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 ▶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SOC 확충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평화경제협력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평화·관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 평화올림픽 유산 계승 및 발전

2. 2022년 재정운영 방향

재정여건

- 세입여건은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 확대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폭의 확대가 예상되나, 대내외적인 코로나19 전개양상과 국제적인 백신 상용화 상황 등의 불확실성 상존 감안 필요
 - 지방세 16.0% ↑, 지방교부세 15.6%, 국고보조금 3.4% ↑ 등
- 세출수요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2022년도 역점사업인 강원형 뉴딜사업의 본격추진과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 경상예산 10.2% ↑, 국비지원사업 4.3% ↑, 자체사업 16.8% 등

중점 편성방향

- Zero-Base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 강원형 뉴딜 등 역점분야에 재투자
-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빠른 경제회복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견인
- 공무원 경상경비, 출자·출연기관, 민간보조단체(기관) 등 공공부문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고통분담
- 사회보장협의,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및 행사·축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도-시군간 경비부담 규칙」 등 부담 원칙 준수

분야별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①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지원

-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970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216
-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1,247
-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 62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114
- 구직활동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104
- 소상공인 창업·경영 및 융자금 이차보전 24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68
-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7
-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11

②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73
-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5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22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84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11
- 제12회 세계합창대회 54
-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준비 64
- 평창평화포럼 12
- 놀러와 강원프로젝트 15
-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8

③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전략산업 육성

-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K-강원' 구축 25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403
-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16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73
- 강원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145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75
-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27
- 경사용 특장식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57
- e-mobility 산업 육성 40
-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14

④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

-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50
- 특수상황지역 개발 711
- DMZ 평화의 길 조성 14
-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58
-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11
-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 1
-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 5
-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7

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1,140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80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48
-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처우개선수당 42
- 기초연금 지급 6,975
- 생계급여 지원 2,206
- 영아수당 지원 131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28

⑥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 기본형 공익직불제 1,389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94
- 어촌뉴딜300 259
- 농촌중심지 활성화 117
- 농어업인 수당 지원 339
- 밭기반 정비 사업 50
- 정책숲가꾸기 지원 307
-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유지보수 193

⑦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78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40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36
- 주차환경 개선사업 133
- 도시재생 뉴딜 사업 579
-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지원 180
-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5
-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117

⑧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 재해위험지역 정비 763
- 치안환경 조성 및 자치경찰 지원 83
- 통합문화 이용권 59
- 지방하천 정비 339
- 하수관로 및 노후상수도 정비 1,347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75
- 체육진흥시설 지원 282
- 문화도시 조성 59

⑨ 기타 사업

-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139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120
-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 155

3. 2022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기준경비 관련

①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 등 개선

- 의회경비 총액한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산정
- 예외사항(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의해 의회국외여비를 편성해야 할 경우 전년 본예산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하나, 차년도 총액한도 산정시 증액분제외

현 행	개 정
<p>[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p> <p>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총액한도 산정방법) - $\{(\text{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297)) + (\text{의회 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176)) + (\text{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05)) + (\text{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297))\}$</p> <p>*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 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p> <p>○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p>	<p>[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p> <p>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총액한도 산정방법) - <u>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통계청 발표)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u> ※ 단, 한도 증가율은 각 자치단체 본예산 자체 세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음</p> <p>* 삭제</p> <p>○ <u>총액한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u> ※ 단, 당해연도에 전년 대비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총액한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p>
<p>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②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의원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p>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②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u>당해연도에 한하여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 추가 편성 가능(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u></p>

②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수립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도 경찰청(서)으로 예산을 재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2. 예산배정</p> <p><input type="checkbox"/> 예산재배정</p> <p>○ 개념 : <u>각 과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 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제1관서의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u></p>	<p>[별표 13] 사업예산 운영기준</p> <p>2. 예산배정</p> <p><input type="checkbox"/> 예산재배정</p> <p>○ 개념 : <u>각 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회사무처, 시·군·자치구, 시·도 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에 한함), 제1관서의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위임하는 것</u></p>

③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정업무경비 신설

- 아동학대 조사에 특수성·전문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활동비 지급근거 마련(기준액 월 5만원)

현 행	개 정
<p>[별표2] 6. 특정업무경비</p> <p>③ 기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 50,000 중략 · <u>(신설)</u> <p style="text-align: right;">(생략)</p> <p>주』</p> <p>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 활동비는 각각 병급 가능</p>	<p>별표2. 6.특정업무경비</p> <p>③ 기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 50,000 중략 · <u>아동학대대응활동비 : 50,000</u> <p style="text-align: right;">(생략)</p> <p>주』</p> <p>2)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간,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자치경찰특수 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간, <u>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는</u> 각각 병급 가능</p>

4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상향

○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 이내(← 136만원)로 기준액 상향

현 행	개 정
<p>[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p> <p>② 기준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p> <p>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p>	<p>[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p> <p>② 기준액 : 2022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8만원이내 (1인당 평균)로 설정</p> <p>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1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p>

2 세출 예산과목 [별표11]

1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 개편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101 인건비	<p>03.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p> <p>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 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생략)</p> <p>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퇴직금) 및 부상치료비</p> <p>다.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p> <p>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량(간식)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p>	101 인건비	<p>03.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p> <p>1.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가.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기본급, 수당(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외 경비성 비용은 별도 편성목 등(201, 202, 203 등) 활용</p> <p>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 기존항목은 304-01 이동</p> <p>다. 삭제 → 기존항목 201 이동</p> <p>라. 삭제 → 기존항목 중 여비는 202, 급량은 201-01 이동</p>
201 일반 운영비	<p>01. 일반운영비</p> <p>4. 피복비 < 신 설 ></p> <p>5. 급량비</p>	201 일반 운영비	<p>01. 일반운영비</p> <p>4. 피복비 라 현업부서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p> <p>5. 급량비</p>

	< 신 설 >		9)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급량비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포함)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공무원(무기계약) 포함)
202	여비	202	여비
	< 신 설 >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도 공무원과 동일 통계목(202-01-05)으로 편성
303	02. 성과상여금	303	02. 성과상여금
	< 신 설 >		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추가)
304	01. 연금부담금	304	01. 연금부담금
	< 신 설 >		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의 국민연금 기관 부담금(추가)
	02. 국민건강보험금		02. 국민건강보험금
	< 신 설 >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04. < 신 설 >		04.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 등
	< 신 설 >		1.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2.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등

②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금액 가이드라인 마련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u>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u>)

③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편성근거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부패신고자에게 선 지급한 보상금을 지자체가 위원회로 상환하기 위한 편성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12. 기타보상금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01 일반 보전금	12. 기타보상금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 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④ 장기근속·퇴직(예정)자 포상금 관련 개선

- 단순 일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포상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지원 문구 삭제

현 행		개 정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 (중략)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경비 나. (삭제) (중략)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5 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 계약비용 편성근거 마련

- 「역사문화권정비법」상 지자체의 문화재 발굴·정비사업을 국가 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편성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308 자치 단체 등 이전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 자치 단체 등 이전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생략)		(생략) ※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제반경비
403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생략)		(생략) ※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경상적 경비 외의 제반경비

6 세외수입 관련 세입편성 목 개선

- '20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230) 신설을 통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하였으나, 기타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개선
 - ※ (기존) 경상적 세외수입(210), 임시적 세외수입(220) → (개선) 임시적 세외수입(220) 관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 관을 분리 신설
 - 주차수입 근거를 주차장 법에서 주차장 법 등으로 변경
 - 폐기물 수입 항목을 종량제, 음식물 외 기타 폐기물 항목 추가
 - 위탁사업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도 세입과목에 명기
 -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통계목 신설을 통해 미사용 잔액과 정산 후 반환금으로 분리

현 행			개 정		
과목 구분		현행 과목구분 설정	과목 구분		개편 과목구분 설정
관	항목 세목		관	항목 세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생략)		(생략)		

212 사용료수입			212 사용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1. 도로점용료수입 2. 도로통행료수입	01	도로 사용료	현행과 동일
02	하천 사용료	1. 하천점용료수입 2. 하천수사용료수입	02	하천 사용료	현행과 동일
03	하수도 사용료	1. 하수도점용료수입 2. 하수도사용료수입	03	하수도 사용료	현행과 동일
04	상수도 사용료	1. 상수도요금수입	04	상수도 사용료	현행과 동일
05	공유수면 사용료	1. 공유수면점용료 2. 공유수면사용료	05	공유수면 사용료	현행과 동일
06	시장 사용료	1.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수입	06	시장 사용료	현행과 동일
07	입장료 수입	1.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	07	입장료 수입	현행과 동일
08	주차요금 수입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08	주차요금 수입	1.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요금수입
09	기타 사용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	09	기타 사용료	현행과 동일
213 수수료수입			213 수수료수입		
01	증지수입	1. 자치단체 수입증지 판매수입	01	증지수입	현행과 동일
02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02	폐기물 처리 수수료	1.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신고)필증 판매수입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3. 기타 폐기물 처리 수수료
03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 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	03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현행과 동일
04	보건의료 수수료	1.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검사 수수료 수입	04	보건의료 수수료	현행과 동일
05	기타 수수료	1.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수료 수입	05	기타 수수료	현행과 동일
214 사업수입			214 사업수입		
(생략)			현행과 동일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 징수교부금수입		
(생략)			현행과 동일		
216 이자수입			216 이자수입		
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01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행과 동일
02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02	융자금 회수이자	현행과 동일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수입	
	03	기타이자 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03	기타이자 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위탁비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상 307-05(민간위탁금), 308-11(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2-03(민간위탁사업비), 403-02(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따른 비용(이하 같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생략)				현행과 동일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222 자치단체간 부담금				
(생략)				현행과 동일				
223 보조금반환수입				223 보조금반환수입				
	01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01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등(위탁비 포함)을 반환받은 금액	
	02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02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1.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위탁비 포함)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224 기타수입				224 기타수입				
(생략)				현행과 동일				
225 지난연도수입				225 지난연도수입				
	01	지난연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01	지난연도 수입	현행과 동일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생략)				현행과 동일				
300 지방교부세 ~ 600 지방채 (생략)				현행과 동일				
710 보전수입 등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생략)		
712 전년도 이월금		
01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도에 반납할 금액
03	전년도 이월사 업비	1.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 시에는 불필요)
713 용자금 원금수입		
(생략)		
714 예치금 회수		
(생략)		
<신설>		
720 내부거래		
(생략)		

711 잉여금		
현행과 동일		
712 전년도 이월금		
01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 시,군,구에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시,도에 반납 예정인 금액
03	전년도 이월사 업비	현행과 동일
713 용자금 원금수입		
현행과 동일		
714 예치금 회수		
현행과 동일		
715 보조금등 반환금		
01	국고 보조금등 반환금	1. 국고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국고로 반납할 금액
02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	1. 시,군,구에서 시·도비 보조금등(위탁비 포함) 정산 후 반환받을 금액으로 시·도로 반납할 금액
720 내부거래		
현행과 동일		

3 기타 보완사항

①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편성시 고려사항 반영

-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만 편성 가능

현 행	개 정
<p>[별표 13] 1. 예산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p>(중략)</p> <p><신 설></p>	<p>[별표 13] 1. 예산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편성 가능

② 재난·재해 목적 예산의 재전용 허용

- 「재난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예산인 경우 재전용 허용

* 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등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현 행	개 정
<p>[별표 13] 3. 예산의 변경</p> <p>□ 예산의 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중략) <p>※ (신설)</p>	<p>[별표 13] 3. 예산의 변경</p> <p>□ 예산의 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중략) <p>※ 「재난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전용된 예산이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p>

3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추진 절차 반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심의회 의결) 등을 반영

현 행	개 정
<p>[별표 13] 1. 예산의 편성 <신 설></p>	<p>[별표 13] 1. 예산의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예산편성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 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 개도국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수원국 국민 현지 초청연수, 개도국 기술전수, 개도국 유학생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국제 기구 기여금, 분담금 등 ○ 국제개발협력으로 분류된 사업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초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 → 광역 →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국조실 순으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4 기금분야

1 재난대응관련 기금지출확대시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생략가능

- 그간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 사업변경에 대해서만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생략이 가능하였으나,
 - 재난 적기 대응을 위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확대(지출금액의 20% 범위) 한 경우에도 심의회위원회 생략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 심의회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 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 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20%이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예시) A정책사업 10억 →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수요 발생으로 2억 증액